

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(미래교육과)

심사보고서

2020. 12. 15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0년 11월 12일
- 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0년 11월 19일
- 라. 상정일자: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0. 12. 7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미래비전추진단 장종연)

- 가. 제안이유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언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
(단위:천원)

사업명	사업내용	출연금액
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	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	5,000,494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,
 - 영등포문화재단은 구립 도서관 및 마을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영등포 지역 독서문화를 진흥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창의·감성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주민복리 증진 차원에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검토결과
 -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,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·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 할 것임.
 - 따라서,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,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(미래교육과)

의안 번호	28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1.
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 이유

“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”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출연대상 : (재)영등포문화재단

나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운영 및 관리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·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사업의 추진 등) 및 제6조(사업의 지원)

다. 사업내용

- 구립도서관 및 마을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관리
-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사업
- 창의예술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

라. 출연 필요성

- 구립도서관 및 마을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영등포구 지역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
- 아동·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미래 핵심역량인 창의·감성교육을 위한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로, 운영의 전문성 및 공공성 확보

마.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(소요예산)

- 범 위

- 구립도서관 3개소 및 마을도서관 3개소 사업비, 인건비, 운영비 등
 - 구립도서관: 대림·문래·선유도서관

- 마을도서관: 여의샛강마을도서관·신길1동·대림3동 마을도서관

○ 그 외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사업 추진

○ 창의예술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비, 인건비 등

- 출연금액

○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: 4,732,544천원

○ 창의예술교육센터: 267,950천원

※ 2021년도 영등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2021. 회계연도 세입·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정

3. 참고사항

○ 관련규정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
-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기본재산의 조정)

-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(운영재원 등)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운영 및 관리)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·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사업의 추진 등) 및 제6조(사업의 지원)

참 고 사 항

가.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0조(재정 지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다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5조(운영 및 관리)

-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운영과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면 도서관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라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·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사업의 추진 등) 및 제6조(사업의 지원)

제5조(사업의 추진 등)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의·인성교육 지원

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의 지원)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,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